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특수대학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대학원의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조의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학위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둔다.

1.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②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학칙 제4조에 따른다.

## 제2장 입학 및 재입학

제4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9조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지원구비서류)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 1부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명서류 1부
-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라.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마. 기타 각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2. 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 1부
- 나. 석사학위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명서류 1부
- 다. 석사학위성적증명서 1부.
- 라.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마. 학과 책임교수 지원승인서 1부(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상이한 지원자에 한함)
- 바. 기타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6조(입학전형 및 평가기준)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전형

- 가. 서류전형
- 나. 전공구술고사

2. 특별전형

- 가. 서류전형
- 나. 면접고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그 특성에 따라 전형별 평가방법을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전형 및 특별전型的 평가요소별 배점과 합격 기준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전형위원 및 위촉방법) ① 각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책임교수를 포함하여 전형위원 2인 이상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그 특성에 따라 전형위원의 위촉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합격의 결정) 각 대학원장은 전형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을 결정한다.

제9조(신입생 등록 및 입학)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각 대학원이 정한 기일까지 등록금을 납입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② 입학이 확정된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재입학) 각 대학원장은 학칙 제12조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 3 장 편 입 학

제11조(편입학) 각 대학원은 학칙 제13조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자격) 편입학전형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수학한 자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제13조(지원서류) 편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지원서 1부.
2. 전적 대학원 수료(재학)증명서 1부.
3. 전적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제14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15조(수업연한) 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중 전적 대학원 이수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고, 각 대학원에서 최소한 두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성적인정) 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인정은 [별표1]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각 대학원 교과목으로 인정·결정하여 각 대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 장 수업연한 및 등록

제17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16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학칙 제17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하며, 매학기 대학원이 정한 기간내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각 대학원의 정규등록과 연구등록 그리고 조기졸업대상자의 등록은 학칙 제30조에 따른다.

③ 연구등록금은 수업료의 15%로 한다.

④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휴학·복학·제적·퇴학) 재학생의 휴학·복학·제적·퇴학에 대해서는 학칙 제31조부터 제34조에 따른다.

#### 제 5 장 학위과정 및 교과과정

제20조(전공의 배정 및 변경) ① 각 대학원 학생이 학과(전공)를 지정하여 입학한 때에는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 각 대학원 재학생이 전공지정 없이 입학한 때에는 둘째 학기 종료일까지 전공지원신청서를 각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셋째 학기 개강일 후 2주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셋째 학기 개강일 후 2주 이후에도 학기를 연장하여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전 1, 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은 둘째학기 수강정정 기간까지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무논문학위과정) ①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학칙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무논문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의 무논문학위과정에 필요한 요건은 [별표2]에 따른다.

③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셋째 학기(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첫째 학기) 개강일 후 2주내에 논문·무논문 학위과정지원신청서를 각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무논문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넷째 학기(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둘째 학기) 개강일 후 4주내에 논문·무논문 학위과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넷째 학기 개강일 4주 이후에도 학기를 연장하여 논문·무논문 학위과정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교과구분 및 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

대학원(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교과목 제외),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은 2학점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교과구분 및 최저이수학점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교과과정의 설정 및 개정) ①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설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정 또는 개정된 교과목은 2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학과(전공)교수회의 및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교과목의 개설) ① 책임교수는 교과과정 중 다음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은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

제25조(보충과목의 이수 및 지정) ① 하위 과정과 학과 또는 전공이 다른 자는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그 하위 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이상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다만, 교육대학원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는 전공에 입학한 자는 보충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② 하위 과정과 학과 또는 전공이 유사한 자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충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교과목 학점은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내용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최종학기에 취득한다.

제26조의 2(교육과정 공동운영) 각 대학원은 학칙 제18조의 2에 따라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장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제27조(수업계획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은 수강신청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의 협의에 의하여 전일제 강의시간편성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수강신청 및 폐강) ① 학생은 매학기 개설 교과목 중 신청절차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은 학기 개강 전 1주일 이내, 재학생은 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기가 끝나기 전에 다음 학기의 수강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전문대학원의 수강신청학점은 매학기 논문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통합과정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제외)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  
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학  
점은 수강신청학점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은 학기당 4학점(학교현  
장실습교과목 신청학기에는 6학점), 보충과목은 학기당 6학점(총 28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 가능한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개설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⑤ 매학기 개설교과목 중 수강신청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  
공의 사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29조(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정정기간내에 변경  
할 수 있고, 폐강 또는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각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책임교수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교과목의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수강교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0조(성적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  
교수는 별도의 방법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신병, 병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일자 변경  
원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성적평가 방법, 입력 및 공시, 성적정정) ① 매학기말 성적평가 방법은 학칙 제28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가 종료된 후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  
하고, 시험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성적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이하 “성적 공시기  
간”이라 한다)까지 학생의 성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제3항의 성적 공시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성적을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의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이의 신청을 받은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성적공시  
기간 내 성적을 정정하여야 하며, 성적은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확정된다.

⑥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착오(입력착오, 오기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  
는 성적확정 후 7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각 대학원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학술교류협정대학 교과목 및 학점인정) 학술교류협정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  
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등록에 관한 내규」 제16조에 따른다.

제32조(평가보류) ①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I”(Incomplete)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기 학위수여 예정자인 경우는 “I”로 평가할 수 없다.

② “I”로 평가된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 또는 사후 제출된 자료로 성적을 평가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대학원이 정한 기간내 제출할 경우 “I” 대신 평가된 성적을 부여한다.

③ 대학원이 정한 기간내 성적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I”는 자동적으로 “F”로 처리된다.

제33조(출석부) 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동안 직접 관리·보존한다.

제34조(재수강) 학생은 이미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 7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35조(지원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 1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종합시험 : 다음의 교과학점을 이수한 자

가. 국제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석사학위과정은 18학점, 박사학위과정은 27학점을 이수한 자(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제외) 재학생의 경우 18학점(보충과목 학점 제외) 이상 취득한 자

다.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교직과목 및 보충과목을 제외하고 14학점을 이수한 자)

제36조(지원절차)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횟수 및 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고, 그 시기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다.

제38조(시험방법)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7조에 따라 실시하되, 국제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전공에 필요한 외국어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제3호에 따른 공인기관의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소지한 자

2. 각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강좌를 이수하고,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은 자

3. 외국인 학생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자

제39조(시험위원 및 평가방법)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과목당 7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40조(합격인정 및 결과보고)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결과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

준함으로써 합격이 인정된다.

② 각 대학원장은 시험의 시행결과와 합격자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횡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제8장 학위청구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42조(논문 및 무논문 지도교수의 위촉 및 변경)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지도교수 선정의사를 존중하고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책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전까지 학위수여가 가능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하고,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2인으로 한다.

④ 공동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및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 시수인정 등 지도교수와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은 본 대학교 지도교수 1인이 담당한다.

1. 타 대학교 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
2.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⑤ 지도교수가 장기출장 및 휴직 등으로 실질적인 논문지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은 책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 및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복직 후 학위수여를 위한 논문지도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⑥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 선정의사를 존중하여 책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촉된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논문계획 발표) 논문학위과정자는 논문심사를 실시하기 직전 학기에 소속 학과(전공)교수 및 학생의 참석하에 논문계획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제44조(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자격) ①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마지막 학기 논문연구 또는 연구보고 학점을 제외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5회 이상(국제전문대학원의 논문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4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제54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4회(국제전문대학원의 논문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선정한 보충과목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입학 이후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② 논문학위과정자는 논문을, 무논문학위과정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5조(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심사의 절차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 1. 예비심사

가. 논문계획발표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 초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심사는 책임교수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나. 예비심사는 학과(전공) 교수들의 참석하에 1회 이상 공개발표로 실시한다.

다. 책임교수와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의 타당성, 연구의 가치, 내용 및 전개방법 등을 종합하여 본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본심사

가. 본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논문심사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수정,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제출자에게 부분, 역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논문이 당해 학기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때는 본심사를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②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심사절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46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청구 및 자격인준) ①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청구자는 당해 학기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요구서 1부.

나.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 또는 연구보고서 1부.

다. 연구윤리서약서 1부

#### 2. 박사학위과정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 추천서 1부

다. 연구윤리서약서 1부

라.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5부

②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논문 또는 무논문 학위과정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47조(논문의 작성 및 체제) ① 논문은 국·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논문의 특성상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초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③ 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되,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 책임교수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의 논문심사위원을 각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2. 박사학위과정 :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위촉하되, 그 중 1~2인은 본 대학교 교원 이외의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사계 권위자를 위촉한다.
3. 각 대학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인을 논문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진행을 주재하도록 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제49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평가방법) ① 논문의 평가는 논문평가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각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인(박사학위과정의 경우 4인) 이상이 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연구보고서의 평가는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0조(논문의 완성 및 판정결과 제출) ① 논문심사청구자는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충실히 수정·보완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부수와 제출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함께 판정결과를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내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연구보고서 완성 및 판정결과 제출) ① 연구보고서 심사청구자는 완성된 연구보고서 1부를 대학원이 정한 기간내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보고서의 판정결과를 각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재심사)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가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절차는 제46조에서 정한 심사청구에 준하고, 해당학기 경과 후 재학연한 내에 실시한다.

제53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발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장 조기졸업

제54조(지원자격) 조기졸업 지원자격은 3회의 정규등록과 셋째 학기까지(국제전문대학원의 논문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2회의 정규등록과 둘째 학기까지 18학점 취득)의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93점 이상인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의 연구 실적이 공인된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확정되는 등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된 자로 한다.

제55조(지원절차 및 선정)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셋째 학기말(국제전문대학원은 둘째 학기말)에 조기졸업이수신청서(소정양식)를 책임교수를 거쳐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조기졸업 대상자는 넷째 학기(국제전문대학원은 셋째 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5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제58조(조기졸업자 결정) 조기졸업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및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10 장 외국인 입학

제59조(지원자격) 외국인으로서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60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지원 제출서류는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61조(입학전형) ①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입국이 불가능하여 입학전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전형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 선발하고 면접고사 후 최종 선발한다.

② 외국인 입학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 입학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 제11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62조(연구과정) 각 대학원은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63조(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각 대학원의 강의를 청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타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64조(전형방법) 연구과정의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65조(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66조(연구 수강 및 학점) ① 연구생은 4개 교과목 이내에서 매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이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제67조(연구생의 등록) ①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 연구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강료는 각 대학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자격, 장소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좌개설시 각 대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 12 장 운영위원회

제69조(운영위원회)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대학원의 운영위원은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각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13 장 장학금

제70조(장학금의 종류) ① 각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우수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합격자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2. 면학장학금 :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3. 교직원 장학금 : 본 대학교(학교법인 동아학숙 포함) 교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85/100점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4.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5. 가족장학금 : 본 대학교에 2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 각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연장자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 6. 교육조교 및 근로학생 장학금 : 교육조교 또는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 7. 현직교직원 장학금(교육대학원에 한함) : 현직교직원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 8. 기타 장학금 :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각 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71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액) 각 대학원의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액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72조(장학금 지급 및 제한) ① 장학금의 지급 및 제한에 대해서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또는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제 14 장 보 칙

제73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교육대학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경영대학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산업정보대학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사회복지대학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법무대학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예술대학원)은 폐지한다.
- ③(적용례) 이 시행세칙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입학 당시의 시행세칙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교육대학원의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제25조 제2호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1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은 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장 명의의 학위기 또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국제전문대학원 한국학전공, 다문화전공 재적생은 각각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재적생으로 하며, 전공이 폐지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전공 재적생은 종전 시행세칙을 따른다.

③(예술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예술대학원 재적생은 문화예술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되는 FTA국제통상전공, 국제통상분쟁조정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시행세칙을 따른다.

[별표1]

대학원별 편입학생 성적인정 범위

편입학기	성적인정학점				비고
	국제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제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2	9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6학점 이내	8학점 이내	
3	18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12학점 이내	

[별표 2]

대학원별 교과구분 및 최저이수학점

1.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전공선택 (본인전공 과목 최소 2과목 이수)	6	18	전공선택 (본인전공 과목 최소 4과목 이수)	10	30
논문연구	1	2	논문연구	2	4
합 계	9	26	합 계	14	40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전공필수	3	9			
전공선택	3	9			
논문연구	1	2			
합 계	9	26			

※국제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논문학위과정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에는 무논문학위과정을 둔다.  
 ※본인의 전공에서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선택과목 6학점(법무부인증 다문화 2급전문가 자격증 희망자는 제외),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선택과목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의 글로벌다문화전공자는 전공필수 9학점, 전공선택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글로벌다문화전공자가 법무부 지정 다문화 사회전문가 2급 자격인정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자격 : 본 대학원 글로벌다문화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글로벌다문화전공 박사과정 수료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공통필수	2	6
						전공필수	3	9
전공선택	8	24	전공선택	8	24	전공선택	5	15
연구보고	1	2	연구보고	1	2	연구보고	1	2
합 계	11	32	합 계	11	32	합 계	11	32

## 2. 특수대학원

(단위 : 학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공통과목 : 4이상	공통과목 : 12	공통기초 : 6	전공필수 : 6	전공필수 : 4	전공필수 : 12
전공과목 : 20이상 (교과교육학:6학점 이상, 교과내용학:10학점 이상)	일반선택 -논문 : 6 -무논문 : 12 전공필수 : 6	전공과목 -논문 : 18 -무논문 : 21	전공선택 -논문 : 18 -무논문 : 21	전공선택 -논문 : 20 -무논문 : 26	전공선택 -논문 : 12 <u>-무논문 : 15</u>
-논문연구 : 4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3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3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연구 : 2 -연구보고 : 2
-논문 : 28 -무논문 : 30	-논문 : 26 -무논문 : 32	-논문 : 26 -무논문 : 30	-논문 : 26 -무논문 : 30	-논문 : 26 -무논문 : 32	-논문 : 26 <u>-무논문 : 29</u>
<p>※ “논문”은 논문학위과정을, “무논문”은 무논문학위과정을 말한다.                  ※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22학점으로 하고, 수료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p>					